

2015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회의개요〉

의안번호	2015-2, 2015-3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5년 6월 22일 (월요일) 16:00 ~ 17:00 ○ 장 소 : 구청 지하1층 통합안전센터 내 회의실		
참석위원	○ 부위원장 : 민원여권과장 ○ 내부위원 :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 외부위원 : 임규철, 주창범, 김지혜		
회의 진행순서	1. 개회선언 2.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소개 (위촉장 수여) 3.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방법 설명 및 심의 4. 폐회선언		
상정안건	연번	의안번호	상정부서
	1	2015-2	도심 재생과
	2	2015-3	건축과
상정안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구에서 개발행위(성·절토)를 신청한 사항에 대해 어느 구역을 성·절토 하겠다는지에 대한 건축도면(성·절토의 량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도면) 정보공개청구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			
신당동 000-000 개발행위 신청내용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해 건축과에서 제출한 개발행위 신청내용 정보공개청구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			
심의결과	연번	의안번호	의결내용
	1	2015-2	기각 (비공개)
	2	2015-3	부분인용 (부분공개)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해관계인일 경우에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공개하고 있다는 점. 즉, 발급 자체가 동의를 받아서 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인 점. 그리고 나대지가 아닌 상태에서 실거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주거형태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본 심의안건은 기각 결정함이 타당함			
개발행위 신청내역 중 기본적인 개요 등 설명서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그리고 도면은 초창기에 도면을 공개했고, 수정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상 공개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체 도면을 공개하기 어렵다면 청구인이 필요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요청하면 그것을 공개하는 쪽으로 부분인용 결정함이 타당함			

〈발언요지〉

- 위촉장 수여식 생략 -

□ 간사

지금부터 「2015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본 심의 진행에 앞서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2건임
- 첫 번째 안건은 도심재생과에서 상정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구에서 개발 행위(성·절토)를 신청한 사항에 대해 어느 구역을 성·절토 하겠다는지에 대한 건축 도면(성·절토의 량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면)」 정보공개청구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임
- 두 번째 안건은 건축과에서 상정한 「신당동 ○○○-○○○ 개발행위 신청내용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해 건축과에서 제출한 개발행위 신청내용」 정보공개청구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임
- 참석 예정이었던 심의위원 모두가 참석하신 관계로 지금부터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겠음
- 먼저 도심재생과부터 상정안건의 취지, 결정사유를 설명하고 부위원장이신 정복영 민원여권과장 주재로 심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음

□ 처리부서

-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중구에서 개발행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건으로
-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역, 개발행위 신청했다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내용 및 도심재생과 의견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개발행위허가 신청 사항 중 성·절토 구역 및 성·절토량 확인 가능한 부분에 대한 도면, 건축과 의견서 이렇게 4가지를 요청함
- 먼저, 개발행위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토지상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성토하거나 절토하는 토지형상을 변경하는 형질변경과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임

- 청구인이 요청한 총 4가지 요청사항 중에서 첫 번째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개발 행위허가 신청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허가대장을 공개함, 두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의내용 이라 던지 도심재생과 의견서를 달라고 한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기간동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함
- 네 번째 요청한 것이 건축과 의견서인데 저희가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면서 건축과에 협의했던 그리고 협의 회신했던 공문을 공개함
- 문제가 된 것이 성·절토 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도면을 공개해 달라는 부분임. 저희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해준 것이 형질변경건만 처리한 것이 10건임. 1건은 서울 신청사 건립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개인 대지상의 건축물 건축하면서 대지조성을 위해서 성토·절토가 수반된 것임
- 이것은 개인 사유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 의견을 청취 함
- 총10건 중에 5건에 대해서는 비공개 요청이 들어옴. 나머지 5건은 응답이 없었음

□ ○○○ 위원

- 제3자 라는 것이 소유자한테 확인을 했다는 것임?

□ 처리부서

- 개발행위 수허가자들한테 저희가 통보를 다 했음
-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개인 대지상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토·절토를 확인하려면 평면도나 단면도나 이런 도면들이 공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개인 사생활에 대한 정보라, 공개되었을 때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하여 처리하였음.

□ ○○○ 위원

- 청구인 ○○○는 왜 이걸 청구했음?

□ 처리부서

- 청구하신 목적은 저희가 허가해드린 건들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음. 신당동

지역의 ○○○을 신축하면서 그 쪽에 약간 성·절토가 있어 개발행위허가가 물려 있는 상황임. 그 건을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본인이 확인하고 싶어 다른 건들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그런 취지.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안 허가해준 모든 것을 내용을 공개해 달라 공개 요청함

□ ○○○ 위원

- 말씀하신 상황이 형평성 비교차원에서 민원 제기를 하신 것 같음
- 실 거주를 하고 있다는 말씀임? 평면도상에 위치하고 있는 예를 들 주택이라면 성·절토 난 부지 위에 현재 실거주가 이루어지고 있음?

□ 처리부서

-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허가해준 것이 총 10건임. 기간이 오래되다보니까 그 당시 허가를 받으신 분에서 소유권이 넘어간 것도 있고, 지금 살지는 않고 임대료를 주는 경우도 있음. 일단 기준은 그때 허가를 받으셨던 분들한테 모두 통지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음

□ ○○○ 위원

- 우리나라에는 판례가 없는데 일본 대법원에는 판례가 있음. 단면도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성이 없다고 이야기함. 그러나 실거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단면도는 효과가 있다고 함. 실 거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 안함. 그런 것처럼 성·절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실거주가 된 상태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보호성이 있음. 거주를 안 하고 있으면 개인정보보호성이 상당히 약함. 본인이 거주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거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주거형태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일본은 판단을 하고 있음.

□ ○○○ 위원

- 이것이 건축도면 중에서 이 분은 지금 성·절토량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도면을 요구하시는 건데 부분 도면을 공개할 경우라도 그분들의 사생활을 침해할만한 정보라는 것이 어떤 것임?

☐ **처리부서**

- 이것은 그냥 나대지 상의 성토·절토가 아니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성토·절토이기 때문에 단면도 같은 건축도면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음.

☐ ○○○○ **위원**

- 그럼 따로 분리해서 요구하시는 부분을 공개할 수는 없는 것임? 성토·절토 부분만을 원하시는 것 같음.

☐ **처리부서**

- 건축하고 도면을 분리를 해서 공개를 한다는 것이 건축이 수반된 성토·절토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 같음.

☐ ○○○○ **위원**

- 성·절토 량이 개인정보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 것임?

☐ **처리부서**

- 성·절토량은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대장을 통해 공개함. 그 기간 동안 허가해준 대장을 정리를 해서 기록을 비치할 하도록 되어 있음. 몇 번지에 몇 제곱미터 성토를 해줬다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공개를 해드립니다. 수허가자 이름만 삭제하고 공개를 해드립니다. 도면까지 공개하는 것은 사유지상의 건축물로 단면도 등이 개인 사생활에 포함될 수 있음.

☐ ○○○○ **위원**

- 건축도면은 본인 아니면 발급이 안 되는 것임?

☐ **처리부서**

- 배치도나 이런 것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공개하도록 되어있음

☐ ○○○○ **위원**

- 건축물 대장을 보면 임차인이나 이런 단서조항이 있지 않음

☐ **처리부서**

- 예. 이해관계안일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공개를 하고 있음

☐ **부위원장**

- 위임을 받으면 가능한 것임?

☐ ○○○○ **위원**

- 그런 조건이 있으면 공개할 수가 없음. 발급 자체가 동의를 받아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과에서 그것을 요구한다고 공개 해준다면 누구든지 다 요구를 할 것임

☐ ○○○○ **위원**

- 나대지가 아닌 상태에서 실거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비공개가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함

☐ ○○○○ **위원**

- 개인 인적사항 같은 자세한 사항이 아닌 이상 공개해도 되는 것 아님?

☐ **처리부서**

- 이름이 노출되는 개인정보는 아니지만 도면이라는 것이 개인이 관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기는 했지만 본인이 용역을 주거나 설계사를 고용하거나 하는데 이러한 설계는 또한 하나의 저작물로 볼 수도 있음

☐ ○○○○ **위원**

- 허가를 받아 오면 공개를 해줄 수 있지만 허가 없이는 어려움

☐ **처리부서**

- 소유자들 대부분도 5분은 회신이 안 왔지만 5분은 비공개를 요청함

☐ **부위원장**

-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청구인이 우리 구청에 공개 요구를 하기 앞서 동의를 받으면, 즉, 5명에게 동의를 받아온다면 공개가 가능한 것임?

☐ **처리부서**

- 만약에 수허가자가 동의를 해준다면 가능함. 그러나 저희가 첫 번째 허가대장을 공개할 때 수허가자의 성함을 모두 삭제하고 공개를 해줌. 만약에 이분이 동의를 받기 위해서 그 당시 허가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다 요청 하면 이 부분은 다시 고려해봐야 함

☐ ○○○○ **위원**

- 또 다른 심의내용임

☐ **부위원장**

- 결국은 동의를 못 받겠네요. 5분은 동의를 원치 않고 5분은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는 것은 결국은 동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이렇게 생각해야겠음. 정보공개 심의회에서는 동의를 받아라 하기 보다는 공개여부만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부위원장**

-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공개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 ○○○, ○○○, ○○○, ○○○, ○○○ 위원

-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첫 번째 안 도심재생과 건은 비공개(기각)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땅땅땅 - (의사봉)

□ 간사

다음은 건축과에서 상정안건의 취지, 결정사유를 설명하고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처리부서

- 도심재생과에도 신청한 ○○○님이 신청한 건으로 신당동 ○○○-○○○ 개발행위 허가 신청내용 및 의견서를 정보공개 요청한 건임
- 이 중 첫 번째는 개발행위 신청내용, 두 번째는 건축과에서 제출한 개발행위 신청내용, 세 번째는 심의를 위해 건축과에서 제출한 의견서임
- 첫 번째 개발행위 신청내용은 비공개, 두 번째 건축과에서 제출한 개발행위 신청내용에 있어서는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신청내용 자체는 첫 번째 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비공개, 세 번째 도시계획 심의를 위해 건축과에서 제출한 의견서는 공개함
- 개발행위 신청내용에 한해서 옆에 기존의 대지를 성토한 건으로서 설계자가 이 건에 대해서 도면을 그리고 이 사안이 건축주에게도 개인적인 사생활로 판단해서 제3자 의견을 청취한 결과 비공개 요청이 있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함
- 부서검토의견은 개발행위 신청내용을 보면 도면이나 기타 단면도 등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소유자가 아닐 경우 열람을 제한하는 사항과 또한 이 건축주의 개인 비밀뿐만 아니라 도면 작성을 하는데 설계자의 창의적인 기법 사안까지 침해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처리한 건임

□ ○○○ 위원

- 같은 것을 청구한 것 같음

□ 처리부서

- 지금 도심재생과에서 했던 신청인과 같은 사람으로 ○○○-○○○ 옆에 사시는 분임. 사실상 ○○○와 계속적인 건축허가를 하면서 분쟁이 있어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분임
- 이 건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건축과에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왔고 현재도 진행중임. 마찰이 있는 상황임. 그래서 공개할 경우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서 비공개 처리함

□ 부위원장

- 이에 앞서 도심재생과에서 한 건과 똑같은 청구인임. 그러면 위치도 동일함?

□ 처리부서

- 건축과에 신청한 건은 ○○○-○○○ 특정지역임. 도심재생과 건은 여러건임.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에 대한 개발행위와 기존에 나갔던 것과 비교 분석을 하려는 의지에서 청구한 것으로 판단됨

□ 부위원장

-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람

□ ○○○ 위원

- ○○○ 건축 진행사항은 어디까지임?

□ 처리부서

- 거의 95% 이상임

□ ○○○ **위원**

- 허가 나갈 때 일조건 상황은 다 해결된 것임? 지적 경계 측량은 다 끝났음?

□ **처리부서**

- 예. 그렇습니다.

□ ○○○ **위원**

- 심의자료 11-10페이지를 보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임. 그리고 창의적인 노하우를 감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이 창의적인 노하우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 **처리부서**

- 개발행위 성토를 하기 위해 신청한 도면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조경이라든지 성토를 어떻게 하고 이에 대한 구조적인 것 그리고 안정성 이러한 것을 다 검토함. 이러한 것 자체가 보통 개인이 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전문가 또는 건축가 분들이 작성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노하우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 ○○○ **위원**

- 개발행위 신청내역을 요청하시는데 요약지 하단에 나온 설명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음? 사생활을 침해할 만한 내용들이 있음?

□ **처리부서**

- 설명서는 이것에 대해 절·성토나 높이, 규모 그리고 관련부서 협의내용 그 정도가 포함됨. 그리고 기본적인 검토의견이 있음

□ ○○○ **위원**

- 설계 개요 같은 것이 다 공개가 되어있음? 몇 층짜리 건물을 지으는가 지하 몇 층이다 이런 것이 입간판 비슷하게 공개되어 있음?

□ **처리부서**

- 네. 다 되어 있음. 허가 표지판 붙어 있음.

□ ○○○ **위원**

- 부분공개로 설명서는 공개가 가능하지 않음? 다 비공개하기보다는 어차피 다 공개된 일반적인 내용이라면 공개가 가능할 것임

□ ○○○ **위원**

- 민원인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함? 반대를 위해서 자료를 얻으시려는 것 같음.

□ **처리부서**

- 앞으로 건축허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성성 같은 것을 판단하시려는 것 같음. 또 향후 어떻게 지어지는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은 것으로 생각됨

□ ○○○ **위원**

- 중구청의 관행은 어떠함?

□ **처리부서**

- 기본적으로 건축 도면이나 이런 것은 정보공개가 들어오면 일단 제3자 의견요청을 들어서 비공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안임. 이렇게 정보공개심의위원회까지 가고 그런 경우는 없었음

□ ○○○ **위원**

- 제3자 의견청취는 행정기관이 법적 귀속력은 없다는 것은 알 것임.

□ 부위원장

- 청구인 의견을 보면,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그 의견을 참고하여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인지 검토한 후 독자적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공공기관이 구속된다고 볼 수 없음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임?

□ ○○○, ○○○ 위원

- 판례에 있음

□ 부위원장

- 그럼 이건이 판례에 해당이 되는 것임? 아까 도심재생과 의견처럼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준해서 도면을 비공개하였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 건도 이것에 해당되는 것임? 이 규칙에 따르면 건축주의 동의하에 발급하는 것임. 이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음?

□ 처리부서

- 적용을 할 수 밖에 없음. 이러한 논리라면 불특정 다수가 정보공개를 했을 때 공개를 못해줄 이유는 없음. 제3자 의견을 듣는 건 형식적인 절차일 뿐임으로 관에서 정보공개를 해준다면 규칙에 완전히 반하는 내용 같음.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면 건축물대장 도면 역시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아무나 발급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됨

□ ○○○ 위원

- 특별한 규정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음. 제3자 정보공개 요청 했을 때 일반적인 것은 제3자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인데. 이러한 경우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평면도에 있어서는 규칙에 나와 있으니 소유주의 동의를 얻지 않는다면 비공개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됨.

☐ **부위원장**

-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공개는 어떤 것에 대한 부분공개임?

☐ ○○○ **위원**

- 다 비공개하는 것 보다는 심의를 거쳐서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것까지는 공개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음. 그런 의미에서 설명서 내용이 일반적인 사항이라면 공개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음.

☐ **부위원장**

- 건축과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처리부서**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음. 앞에 기본적인 개요 등 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것임?

☐ ○○○ **위원**

- 일반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라면 공개가 가능함

☐ ○○○ **위원**

- 설명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임? 개인정보도 들어감?

☐ **처리부서**

- 개인정보라기보다는 대지 위치, 절·성토 높이, 량 , 그 다음 관련부서 의견, 검토의견 등임

☐ **부위원장**

- 그리고 담당자한테 들은 바로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들음.

□ **처리부서**

- 이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 허가의 외제 사항으로서 건축허가 2차 설계변경 들어온 건에 대해서 기존에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함.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를 통해서 비공개결정이 나서 회신하였음. 현재 그 건을 가지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 중임

□ **부위원장**

- 이 건과는 별개의 건이네요.

□ **처리부서**

-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위원**

- ○○○가 완공된 상태. 그리고 실 거주 상태인 경우에는 공개는 무리라고 보고 있음. 근데 공사 초기에는 개인적으로 공개해야한다고 봄. 말씀하신 것처럼 90%이상 진행 되었다면 사실상 실거주 비슷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음. 개인적으로는 비공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음.

□ ○○○ **위원**

- 개인한테 주는 피해가 큼. 이것은 사실 개인 실거주라 볼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공공성에 가까운 것임. 이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 어떤 피해를 생각해서 공개하는 것이 ○○○로서도 주변사람들의 필요요구도 충족시킬 필요도 있음. 이것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과는 다르게 판단됨.

□ ○○○ 위원

- 부분공개를 했을 경우 ○○○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방어할 수 있음? 이어서 공개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함. 또 다른 민원이 생길 경우에 방어할 수 있음?

□ ○○○ 위원

- 심의자료 11-11 보시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비공개 취소한 건에 대해서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됨. ○○○가 혼자 사는 집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집회만 하는 부분이라면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부위원장

- 청구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것을 공개하다가 자기 관련 부분만 해달라고 축소하여 청구한 것 아님? 자신의 집하고 인접해 있는 부분만 한 것 아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이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내려온 것임?

□ ○○○ 위원

- 이것은 정보를 받아 특별한 영업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라 자기의 기본적인 재산권이라던가 생활 측면에서 지키고 싶은 것 같음

□ 부위원장

- 여기서 보면 청구인이 순수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도면이 나감으로서 정보공개가 된다는 것이 나옴. 건축의 기법이나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들도 노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옴

□ ○○○ 위원

- 그것은 맞지만 개인의 집이 아닌 ○○○ 같은 경우는 주변의 입장을 상당히 고려해야 함.

□ ○○○ 위원

- ○○○ 입장은 비공개 요청했음?

□ **처리부서**

- 네.

□ ○○○ **위원**

- 제 생각엔 건축물 대장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서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이 ○○○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동의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음? 그래서 저는 비공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그리고 비공개 사유에 6호뿐만 아니라 영업상 비밀을 알려줄 수 있가 때문에 7호까지도 비공개 사유에 포함되어야 함

□ **부위원장**

- 그러니까 비공개로 하고 청구인이 원하면 ○○○에 요청을 해서 받으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임? 동의합니다.

□ ○○○ **위원**

- 그런데 보통 ○○○가 확장할 때 이러한 것이 들어와야 하는데 왜 거의 완공된 상태에서 들어온 것임?

□ **처리부서**

- 초반에도 들어옴. 그때는 건축 도면을 공개 함. 그 당시 분쟁이 심하지 않았고 작년 6월~7월경 의견조회를 거쳐 공개를 해드림. 이것이 계속 이어져 민원으로 발생 하니까 건축주 쪽에서는 그 이후부터는 비공개를 요청함

□ ○○○ **위원**

- 최초 공개가 된 도면에서 지금 수정이 된 것임?

□ **처리부서**

- 네, 약간 수정됨

□ ○○○ **위원**

- 그림 비공개 이유가 없지 않음?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전혀 없음

□ ○○○ **위원**

- 그렇다면 더욱 더 공개가 되어야 함

□ ○○○ **위원**

- 중간의 설계 변경에 의해서 다른 쪽에 피해가 많이 있는 부분임?

□ **처리부서**

- 설계 변경을 한 부분이 큰 부분은 아니고 옆에 인접대지에 성토 부분과 조경설치 부분 그쪽에 조금 변경된 사안임. 그것으로 개발행위를 받은 사항이고 최초 허가 나간 도면에서 크게 건물형태가 바뀌고 그런 부분은 없음

□ ○○○ **위원**

- 그림 이미 공개가 된 사안임

□ ○○○ **위원**

- 그림 이야기가 달라짐
- 말씀하신 것처럼 초창기에 도면을 공개했고, 수정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상 공개된 것과 똑같은 것임

□ ○○○ **위원**

- 그림 전체 공개가 어렵다면 필요한 부분을 공개 요청하면 검토하여 공개해주는 쪽으로 함

□ **부위원장**

-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위원**

- 최초에 공개를 해주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부분공개 함

□ ○○○ **위원**

- 부분공개를 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또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함

□ **부위원장**

- 저는 비공개함. 이전에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했으면 모르지만 진행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득실을 따져봤을 때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함
- 그럼 부분공개 5명, 비공개 1명 이렇게 해서 부분인용 결정하고 부분인용에 대해서는 전체 도면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필요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요청을 하면 그것을 공개하는 쪽으로 결정함

□ **부위원장**

두 번째 안 건축과 건은 부분인용(부분공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땅땅땅 - (의사봉)